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홍기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654 발의연월일: 2024. 7. 12.

발 의 자:홍기원·한준호·박희승

이정문・박 정・권칠승

윤종군 • 정을호 • 박상혁

윤후덕 · 김준형 · 김태년

허 영 · 민형배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"북한이탈주민"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주소, 직계가족, 배우자,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뜻함.

그러나 "이탈"이라는 단어는 "어떤 범위나 대열에서 벗어남"이라는 의미로, 주로 낙오하거나 적응하지 못해 무단으로 벗어나는 것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데 이는 우리 사회를 주체적으로 찾아온 북한 출신의우리 국민을 일컫는 데 적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"북한이탈주민"을 대신하여 "북한을 고향으로 한 우리 국민"이라는 의미의 "이북민"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, 우리 사회에 정착한 북

한 출신의 우리 국민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(안 제명 및 제2조 등).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"을 "이북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"로 한다.

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"북한이탈주민"을 각각 "이북민"으로 한다. 제3조 중 "북한이탈주민"을 "이북민"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 및 제4항 중 "북한이탈주민"을 각각 "이북민"으로 한다.

제4조의3제1항 중 "북한이탈주민"을 "이북민"으로 한다.

제5조제3항 단서 중 "북한이탈주민"을 "이북민"으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중 "북한이탈주민"을 "이북민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북한이탈주민"을 각각 "이북민"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본문 중 "북한이탈주민"을 "이북민"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"북한이탈주민"을 "이북민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북한이탈주민"을 "이북민"으로 한다.

제11조제3항 중 "북한이탈"을 "북한을 벗어난"으로 한다.

제11조의2제3항 중 "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"을 "이북민지원재단"으로 한다.

제15조의2제1항 중 "북한이탈주민"을 "이북민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"북한이탈주민"을 각각 "이북민"으로 한다. 제15조의3제1항 중 "북한이탈주민"을 "이북민"으로 한다.

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북한이탈주민"을 "이북민"으로 한다.

제17조의4 중 "북한이탈주민"을 "이북민"으로 한다.

제1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북한이탈주민"을 "이북민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"북한이탈주민"을 각각 "이북민"으로 한다.

제17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북한이탈주민"을 "이북민"으로 한다.

제18조제1항 중 "북한이탈주민"을 "이북민"으로 한다.

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"북한이탈주민"을 각각 "이북민"으로 한다.

제19조의3제1항 중 "북한이탈주민"을 "이북민"으로 한다.

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북한이탈주민"을 "이북민"으로 한다.

제22조의3제1항 중 "북한이탈주민"을 각각 "이북민"으로 한다.

제24조제2항 중 "북한이탈주민"을 "이북민"으로 한다.

제24조의2의 제목 중 "북한이탈주민"을 "이북민"으로 하고, 같은 조제1항 및 제2항 중 "북한이탈주민"을 각각 "이북민"으로 한다.

제24조의3제1항 중 "북한이탈주민"을 각각 "이북민"으로 한다.

제30조의 제목 "(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)"을 "(이북민지원재단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북한이탈주민에"을 "이북민에"으로, "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"을 "이북민지원재단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중 "북한이탈주민"을 각각 "이북민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8호의2 중 "북한이탈주민"을 "이북민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9호 중 "북한이탈주민"을 "이북민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9호 중 "북한이탈주민"을 "이북민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"북한이탈주민"을 "이북민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4항 중 "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"을 "이북민지원재단"으로 한다.

제34조제1항 중 "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"을 "이북민지원재단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각각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북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북민지원재단으로 본다.

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2제3항제6호 중 "북한이탈주민확인증명서"를 "이북민확인증명서"로 한다.

②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제7호 중 "북한이탈주민확인증명서"를 "이북민확인증명서"로 한다.

③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제2항제13호 중 "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"을 "「이북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"로, "북한 이탈주민"을 "이북민"으로 한다.

④ 군무원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제8호 중 "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"을 "「이북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"로, "북한 이탈주민"을 "이북민"으로 한다.

⑤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전단 중 "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"을 "「이북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"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"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"를 "이북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"로 한다.

⑥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4항제2호 중 "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"을 "「이북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
⑦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.

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"을 "「이북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"로, "북한이탈주민"을 "이북민"으로 한다.

⑧ 법교육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 중 "북한이탈주민"을 "이북민"으로 한다.

⑨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5호가목 중 "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"을 "「이북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
⑩ 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2항 중 "북한이탈주민"을 "이북민"으로 한다.

①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7호 중 "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"을 "「이북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
⑫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호나목 중 "북한이탈주민"을 "「이북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이북민"으로 한다.

③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제4호 중 "북한이탈주민"을 "이북민"으로 한다.

④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0조제2항제3호 중 "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"을 "「이북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"로, "북한 이탈주민"을 "이북민"으로 한다.

①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제2항제13호 중 "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"을 "「이북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"로, "북한 이탈주민"을 "이북민"으로 한다.

(16) 진로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"북한이탈주민"을 "이북민"으로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	이북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
원에 관한 법률	관한 법률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" <u>북한이탈주민</u> "이란 군사분	1 <u>이북민</u>
계선 이북지역(이하"북한"이	
라 한다)에 주소, 직계가족,	
배우자, 직장 등을 두고 있는	
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	
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	
사람을 말한다.	
2. "보호대상자"란 이 법에 따	2
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<u>북한</u>	<u>o</u>]
<u>이탈주민</u> 을 말한다.	북민
3. • 4. (생 략)	3. • 4. (현행과 같음)
제3조(적용범위) 이 법은 대한민	제3조(적용범위)
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	
표시한 <u>북한이탈주민</u> 에 대하여	<u>이북민</u>
적용한다.	<u>.</u>
제4조(기본원칙) ① (생 략)	제4조(기본원칙) ① (현행과 같
	<u> </u>
②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	2
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	이북민

및	지원	등을	위하여	외교적
上草	책을 디	하여이	i 한다.	

- ③ (생략)
- ④ 통일부장관은 <u>북한이탈주민</u>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<u>북한이탈주민</u>의 실태를 파악하고,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4조의3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)

- ① 통일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3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~ ⑥ (생 략)
- 제5조(보호기준 등) ①·② (생략)
 - ③ 보호대상자를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,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

· ③ (현행과 같음)
④이북민
이북민
<u>기 개 记</u>
제4조의3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)
①이북민
<u> </u>
· ② ~ ⑥ (현행과 같음)
제5조(보호기준 등) ①・② (현행
과 같음) ③
<u> </u>
<u>.</u>
.л н д
<u>이북민</u>

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.

④ ~ ⑥ (생 략)

제6조(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
착지원협의회) ① 북한이탈주
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·조정
하고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
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
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
부에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
착지원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
한다)를 둔다.

1. ~ 6. (생략)

② ~ ④ (생 략)

제7조(보호신청 등) ① <u>북한이탈</u> 주민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(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한다.이하 "재외공관장등"이라 한다)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한다.다만,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한다.다만,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한지 아니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~ ⑤ (생 략)

제6	 ④ ~ ⑥ (현행과 같음) S조(<u>이북민</u> 보호 및 정착지원 협의회) ① <u>이북민</u>
	~ 6. (현행과 같음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7조(보호신청 등) ① <u>이북민</u>
- - -	
-	 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9조(보호	결정의	기준	등)	1
(생	략)				

- ② 제1항제5호의 경우 <u>북한이</u> <u>탈주민</u>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③ (생략)
- ④ 통일부장관은 <u>북한이탈주민</u> 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다.
- 1. · 2. (생략)
- ⑤ (생략)
- 제11조(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 등) ①·② (생 략)
 - ③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 서 보호받고 있는 동안 신원 및 북한이탈 동기의 확인, 건강 진단, 그 밖에 정착지원에 필요 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- 제11조의2(무연고청소년 보호) ① ·② (생 략)

제9조(보호 결정의 기준 등) ①
(현행과 같음)
② <u>이북민</u>
<u>.</u>
③ (현행과 같음)
④이북민
· 1.•2. (현행과 같음)
5 (현행과 같음)
제11조(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
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3
<u>북한을 벗어난</u>
제11조의2(무연고청소년 보호) ①
· ② (현행과 같음)

③ 통일부장관은 무연고청소년 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자, 제30 조에 따른 <u>북한이탈주민지원재</u> 단,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민간 단체 등과 상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④ ~ ⑧ (생 략)

- 제15조의2(지역적응센터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) ① 통일부장 관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적 응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격 및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(이하 "지방자치단체장"이라 한 다)과 협의하여 지역적응센터 로 지정・운영할 수 있다.
 - ② 통일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지역적 응센터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 - 1. (생략)
 - 2. <u>북한이탈주민</u>의 특성을 고려 한 심리 및 진로상담
 - 3. <u>북한이탈주민</u>에 대한 생활정

(3)
이북민지원재단
④ ~ ⑧ (현행과 같음)
제15조의2(지역적응센터의 지정
및 업무의 위탁) ①
<u>이북민</u>
②
<u>.</u>
1. (현행과 같음)
2. 이북민
3. 이북민

보제공·취업서비스 및 사회 서비스 안내

- 4. 그 밖에 <u>북한이탈주민</u>의 지역적응과 관련하여 통일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~ ⑤ (생 략)
- 제15조의3(남북통합문화센터 설립·운영)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남북문화 통합에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북통합문화센터를 설립·운영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- 제17조의3(영농 정착지원) ① 통 일부장관은 영농(營農)을 희망 하는 <u>북한이탈주민</u>에 대하여 영농 정착을 위한 다음 각 호 의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1. ~ 4. (생 략)
 - ② (생 략)
- 제17조의4(세제혜택)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는 <u>북한이탈주민</u>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

4이북민
4. <u>기식 년</u>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제15조의3(남북통합문화센터 설
립·운영) ①이
북민
<u>, , </u>
② (현행과 같음)
제17조의3(영농 정착지원) ①
제17고리3(8 8 경우시년) ①
<u>이 북 민</u>
,
1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
제17조의4(세제혜택)
이북민

- 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거 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감면할 수 있다. 제17조의5(우선 구매 등) ① 통일 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고용 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모두 충족하는 모범이 되 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생산품
 - 1. 연간 평균 3명 이상의 <u>북한</u> 이탈주민을 고용할 것

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

-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<u>북한</u>이탈주민으로 고용할 것
- ② (생략)

있다.

- 제17조의6(창업 지원) ① 통일부 장관은 <u>북한이탈주민</u>의 창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・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1. ~ 5. (생 략)
 - ② (생략)
- 제18조(특별임용) ① 북한에서의 자격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 등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공무원으

 제17조의5(우선 구매 등) ① <u>이북민</u>
1 <u>이북</u> <u>민</u>
2 <u>o</u>]
<u>북민</u>
이북민

로 채용하	는 것이	필요하다고
인정되는	사람에	대하여는
「국가공무	원법」 기	세28조제2항
및 「지방금	공무원법」	제27조제
2항에도 불	구하고 불	루한을 벗어
나기 전의	자격 • 경	력 등을 고
려하여 국	가공무원	또는 지방
공무원으로	특별임용	용할 수 있
다.		

②・③ (생략)

제18조의2(공공기관 평가 반영)

- ①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 체 및 공공기관은 <u>북한이탈주</u> 민을 고용하기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한다.
- ② 「정부업무평가 기본법」에 따른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 단체 및 공공기관의 평가 시 <u>북한이탈주민</u> 고용률을 평가항 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.

③ (생 략)

제19조의3(주민등록번호 정정의 특례) ① <u>북한이탈주민</u> 중 정 착지원시설의 소재지를 기준으 로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사람은 거주지의 시장·

②・③ (현행과 같음)
제18조의2(공공기관 평가 반영)
①
이북민
<u>.</u>
②
이북민
③ (현행과 같음)
제19조의3(주민등록번호 정정의
특례) ① <u>이북민</u>

군수·구청장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정정을 한 번만 신청할 수 있 다.
② (생 략)

- 제22조(거주지 보호) ①·② (생략)
 - ③ 통일부장관은 <u>북한이탈주민</u>에 대하여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(이하 "실태조사"라 한다)를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~ 6. (생략)
 - ④ (생 략)
- 제22조의3(전문상담사제도 운영)
 - ① 통일부장관은 거주지에 전입한 <u>북한이탈주민</u>에 대한 정신건강 검사 등 전문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<u>북한이탈주민</u> 전문상담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.
- ②·③ (생 략) 제24조(교육지원) ① (생 략)
 - ② 통일부장관은 예산의 범위

② (현행과 같음)
제22조(거주지 보호) ①・② (현
행과 같음)
③이북민
<u>,</u>
1. ~ 6. (현행과 같음)
④ (현행과 같음)
제22조의3(전문상담사제도 운영)
①
<u>이북민</u>
이북민
· 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24조(교육지원) ① (현행과 같
<u> </u>
$\langle \Omega \rangle$

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북한이탈주민</u>을 대상으로 초·중등교육을 실시하는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지원할 수 있다.

③ (생 략)

- 제24조의2(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의 설립) ① 통일부장관은 탈북 청소년(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사람을 포함한다)의일반학교 진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착지원시설 내에 북한이탈주민 에비학교를 설립・운영할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<u>북한이탈주민</u> 예비학교의 교육기간, 프로그램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4조의3(공유재산의 대부·사용 등에 관한 특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<u>북한이탈주민</u> 또는 그 자녀의 정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

<u>이북민</u>
③ (현행과 같음)
제24조의2(<u>이북민</u> 예비학교의 설
립) ①
이북민
이 ^브 -피
<u>이북민</u>
_
· ②이북민
<u>.</u>
제24조의3(공유재산의 대부・사
용 등에 관한 특례) ①
<u>이북민</u>
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	
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<u>북</u>	이북민
한이탈주민이나 그 자녀를 대	
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	
로서 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2	
조에 따른 학교에 수의(隨意)의	
방법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・수	
익하게 할 수 있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30조(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) ①	제30조(이북민지원재단) ①
정부는 <u>북한이탈주민에</u> 대한	<u>이북민에</u>
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<u>북</u>	이북민
한이탈주민지원재단(이하 "재	지원재단
단"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	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
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	4
을 수행한다.	
1. <u>북한이탈주민</u> 의 생활안정 및	1. <u>이북민</u>
사회적응 지원사업	
2. <u>북한이탈주민</u> 의 취업 및 창	2. <u>이북민</u>
업 지원사업	
3. <u>북한이탈주민</u> 에 대한 직업훈	3. <u>이북민</u>
련에 필요한 사업	
4. <u>북한이탈주민</u> 에 대한 장학사	4. <u>이북민</u>
업	

5. <u>북한이탈주민</u>에 대한 전문상 5. <u>이북민</u>-

담인력의	양성과	전문상담사
업		

- 6. <u>북한이탈주민</u>과 관련된 민간 단체 협력사업
- 7. <u>북한이탈주민</u>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·연구사업
- 8. <u>북한이탈주민</u>에 관한 실태조 사 및 통계구축사업
- 8의2. <u>북한이탈주민</u>에 대한 영 농정착지원에 관한 사업
- 9.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<u>북한</u>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단 에 위탁하는 사업
- ⑤ 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, 이사장은 북한이탈주민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제청으로 통일부장관이 임명하고, 이사와 감사의 임명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이 경우 이사장,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하되,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있다.

6. <u>이북민</u>
 7. <u>이북민</u>
8. <u>이북민</u>
8의2. <u>이북민</u>
9 <u>이북</u> <u>민</u>
(5)
이북민

⑥ ~ ③ (생 략) ⑥ ~ ③ (현행과 같음) ⑭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│ 자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또 ----이북민지원재단-----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 여서는 아니 된다. ① (생략) ①5·16 (현행과 같음) 제34조(과태료) ① 제30조제14항 제34조(과태료) ① ------을 위반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 ----이북민지원재단--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②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